



**제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현재 당사의 임단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서 일반적으로 불참 통보한 상태입니다.

질의 1.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키로 일정까지 확정되어 통보하였으나 조합에서 일반적인 불참으로 미 실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2.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된 상태인 바, 3개월이란 주기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노조 측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라도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개최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질의 1, 3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에 의하면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충분한 시간을 주어 동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소집을 하였고, 위원장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회의 개최일에 근로자 측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동 위원회가 개의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정기회의 3개월 주기는 동 위원회 개최일 이후부터 3월을 말합니다.

**제목**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영 별표 3의 1-20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근로자수 500명 이상이라면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 ① 2명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자체채용 1인과 대행기관 대행으로 1명 선임 같은 가능한지요?
- ② 또는 대행기관에서 2인 1조를 1팀으로 하여 2팀이 대행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이것으로 안전관리자 2인을 선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 ③ “①”에서 1명은 대행으로 가능하다면 대행계약 인원은 500명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1/2인 250명으로 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갑과 을의 별칙에 의한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 ④ 규칙별표 5의 대행인력기준에 1인당 대행사업장수는 30개소 이하, 근로자수 2,000명 이하로 되어 있는 데 “③”문의 사항에서 대행계약인원을 산정할 때 예를 들어 A씨가 담당하는 대행사업장의 근로자수가 1,700명인 경우 250명으로 대행인원 계약을 한다면 2,000명 이하가 되지만 500명으로 계약하면 2,000명이 초과됩니다. 이런 경우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그중 1인을 대행으로 하는 경우 대행인원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만약 250명 정도로 대행 인원 계약이 가능하다면 대행계약서상 1인당 대행사업장 근로자수 2,000명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장의 인원을 500명으로 간주하여 1인당 대행한계 초과로 보는 건 아닌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영 별표 3의 1-20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이라면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하게 되어 있으나, 기업활동규제 완화와 관련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같음됩니다. 이 경우 대행계약 인원은 500명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업장을 담당하는 대행요원은 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합이 2,00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오존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토대로 측정 횟수가 1년 1회로 조정된 경우, 신규로 측정항목에 추가된 물질을 측정해야 하는지와 측정횟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용접작업의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2차 부산물로서 오존 등이 발생되는데 이것도 측정해야 하는지요(오존은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04년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확대·적용된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면 되며, 오존에 대해서도 6월 1회 이상 측정하면 됩니다.

※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차 부산물로 발생되어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면 측정을 해야 함

**제목** 토출압력이 9kg/cm<sup>2</sup> 이하인 공기압축기 취급근로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동법 시행규칙 제33조는 '94.3.29일 개정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특별교육 대상 인원이 법 개정 전인 '83년에 입사하여 특별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인지요?

또 법에는 압력용기를 설치·취급하는 인원은 특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구 설비가 철거되고 새롭게 압력용기가 설치되었다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신 설비가 설치되었다면 특별교육을 재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출압력이 9kg/cm<sup>2</sup> 이하인 공기압축기를 운전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별표 8의2의 특별교육 실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특별교육 실시의무는 '81.12.31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전문개정 등 법 개정을 거치면서도 현행 동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 바, 특별교육 실시 대상자임에도 동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작업설비,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역시 작업설비, 작업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동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내용으로는 새롭게 설치된 압력용기의 특성 및 작업내용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설비 및 작업내용의 변경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질의는 내용만으로 “토출압력이 9kg/cm<sup>2</sup> 이하인 공기압축기”의 정확한 게이지 압력을 알 수는 없으나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1호 라목(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의해 압력용기의 경우 “게이지 압력이 1kg/cm<sup>2</sup>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질의한 공기압축기가 동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